

●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5년 12월 31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 중 “사본”을 “사본(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”를 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적어”를 “기재하여”로, “돌려주어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”를 “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적어”를 “기재하여”로, “돌려주어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”를 “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적어”를 “기재하여”로, “돌려주어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”를 “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적어”를 “기재하여”로, “돌려주어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”를 “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적어”를 “기재하여”로, “돌려주어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

제2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

제3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50조제2항제2호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(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사에 의한 선임·해임 사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)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“사본”을 “사본(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별지 제7호서식 앞쪽 승인받은 자의 제조·보관시설 소재지란 다음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자
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소재지(사업장)란 다음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
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승인을 받은 자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주소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

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“살생물물질”을 “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”으로 한다.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18호의2서식 제출인의 주소란 다음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서식 제출사항의 제조·수입란 중 “[] 수입 [] 제조 및 수입”을 “[] 수입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를 삭제한다.

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
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지 제19호서식 신청인의 소재지(사업장)란 다음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를 삭제한다.

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
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소재지(사업장)란 다음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
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승인받은 자의 소재지(사업장)란 다음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분	[] 제조자 [] 수입자 []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35호서식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“신고인(선임된 자)” 을 “신고인(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)” 으로, “국외 제조자(선임자)” 를 “국외제조자” 로 한다.

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및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부서류	1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신고인, 국외제조자, 국내수입자 및 살생물제 정보 등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)
------	--

작성방법

1. 국내 수입자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2. "국외제조자의 소재지(사업장)"란은 국외제조자가 해당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.
3. "살생물제 정보의 고유번호(CAS No. 등)"란은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승인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그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공개 대상 정보에 추가하고,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등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승인관청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등의 서류는 첨부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